

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17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자치행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가.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모집의 이유와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여 소집 근거를 추가함.

2. 주요골자

가. 안 제6조(위원회의 운영) 제1항 중 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되”를 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”로 수정한다.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(위원회의 운영) 제1항 중 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”를 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”로 수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	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<u>필요시</u> 소집하되,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